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61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김남희 · 맹성규 · 정태호
임호선 · 박상혁 · 전진숙
임미애 · 이소영 · 김 윤
이수진 · 김용만 · 이성운
박민규 · 박홍배 · 박희승
최혁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범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신체 이미지’를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경우에는 현행법 제14조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은 판결의 영향으로, 디지털 기기가 고도화된 현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송받은 신체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등의 경우도 불법촬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

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되거나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저장된 신체 이미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5항, 제14조의3제1항, 제22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같다) 또는”으로, “제1항의 촬영”을 “제1항·제2항의 촬영(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죄”를 “제3항의 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②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되거나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유발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하거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항·제2항의 촬영(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

제3항의 죄-----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⑥ -----제1항부터 제4항-----

-----.